

육계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

본 계약서는 대한양계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양계농가, 학계, 연구계 등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 팀이 12회에 걸친 보완작업 끝에 완성된 계약서로 2002년 9월 17일 발표되었던 내용이다. -편집자주-

육계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 내용

육계계열주체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육계계열농가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계열화사업 동반자 입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원가를 절감시키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이익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을”이 육계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 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시 비치하여 “을”的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자재는 “갑”的 재산이므로 “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육계출하 시마다 사료 등 남은 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지체없이 사육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육계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도구를 위생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갑”으로부터 사육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위탁 사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的 위탁을 받아 생산한 생산물(육계) 전량을 “갑”에게 출하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불임 기준에 의거 사육비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동안 “갑” 이외의 제 3인과 육계위탁사육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갑”으로

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갑”的 육계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사양관리) ① “갑”은 사양 및 질병관리 전문지도 요원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을”的 농장을 방문하고 새로운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관리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을”에게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的 농장을 방문할 때에는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갑”은 “을”的 방역상 필요한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관리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육계출하 시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육중인 육계가 질병 등 이상징후를 보일 경우 자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출하일정변경 등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열농가로서 계약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갑” 또는 “을”이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사육수수 및 회전수) ① 사육수수는 현재의 시설로서 1회 입식시에 사육가능한 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육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입추수수를 조절한다.

② 사육시설을 증축 및 신축하거나, 현재의 시설을 폐쇄하여 사육수수를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연간 사육 회전수는 5회전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 닭고기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재의 공급과 품질) ① “갑”은 수당 생체중이 35g이상이고 건강상태가 우수한 병아리를 “을”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병아리 운송시 송장에는 병아리를 생산한 부화장, 해당종란을 생산한 종계장, 종계의 입추일령 및 사양기록부, 종계의 주요질병에 대한 항체 역가검사 결과(뉴캐슬병,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료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갑”的 책임하에 “을”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을”은 사료의 품질상태 및 중량을 확인한 인수증을 “갑”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사료품질 기준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을”은 사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갑”에게 반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갑”은 병아리 사육에 필요한 약품, 깔짚, 연료 등 자재를 붙임의 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병아리 사육수수료 정산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현물로 공급 할 수 있다.

제7조(병아리 입추) ① “을”은 육계 출하 후 계사 내외부 보수 및 물청소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유해세균 번식을 차단하여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입추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추일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을”이 제1항의 사항을 이해하지 아니 할 때 “갑”은 “을”이 이를 시정 또는 조치할 때까지 병아리 입추를 유보시키고, 계획된 입추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이 공급하는 병아리가 “을”的 농장에 도착하면 “을”은 지체없이 병아리의 수량(덤 3% 포함)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을”이 확인한 이후의 부족한 병아리 수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입추후 병아리 불량이 원인으로 판단되는 폐사가 발생하면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사 원인이 병아리 불량으로 확인되면 입추 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는 덤프(3%)을 초과한 폐사수량만을 입추수수에서 차감하고, 7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원인으로 폐사가 발생할 경우 폐사 전량을 입추수수에서 차감한다. 단, 폐사 원인이 병아리 불량 때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갑”的 동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쌍방이 인정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질병진단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사양 및 기록관리) ① 계약사육 기간중 “을”은 “갑”的 육계만을 사육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하는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的 사양관리를 지도하고, “을”的 육계 사육 도중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사육 과정과 “갑”的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을”的 농장을 방문하여 사양관리 사항을 점검 및 확인하고, 시정 또는 개선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을”에게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방역 및 위생관리) ① “갑”은 농가별 사육환경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역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을”에게 제시하고, 백신접종 등 방역지도를 하여야 하며 “을”은 그 방역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的 농장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차량과 외부인의 진입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차량 및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불필요하게 계사내부를 개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육하여 “갑”에게 출하한 육계에는 인체에 유해한 항생 및 항균물질 등의 잔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하예정 1주일 전부터 출하시까지 육계에 약품을 급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갑”的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 “갑”과 상의 없이 “을”的 사용한 항생 및 항균잔류물질이 검출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10조(폐사 및 사고 처리) ① 입추일부터 출하일까지 발생한 인정 폐사율은 덤프 3%를 제외한 입추수수 기

준 5%이내로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역 사업단 또는 “갑”의 수의사가 인정하는 법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을”의 관리 소홀로 더 이상 사육이 곤란할 것으로 “갑”이 판정하여 폐기하는 경우 “갑”이 직접 공급한 자재대금(“갑”的 장부상 가격)은 “갑”과 “을”이 각각 1/2씩 부담하며, 그 외 사육비 등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도 “을”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갑”은 백신접종 등 지속적인 방역지도를 하여야 하며, 법정전염병 발생주의보 또는 경보가 있음에도 “을”이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갑이 제시한 뉴캣슬병에 대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을 “을”的 부담으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입추시기는 “갑”的 결정에 따르며, 법정 전염병이 근절될 때까지 입추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⑤ 천재지변으로 손실이 발생될 경우 “갑”은 “갑”이 직접 공급한 자재대금을, “을”은 “을”이 직접 부담한 자재대금에 대하여 각각 “갑”과 “을”이 손해를 본다. 단, 천재지변 이후 살아남은 수수에 대하여 출하분이 있을 경우는 본계약서에 준하며, 천재지변 여부는 관련 공공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육계 출하) ① 출하 예정일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잠정 결정하고, 최종 출하일은 “갑”이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다만, 육계의 성장속도 및 “갑” 또는 “을”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출하중량은 평균체중 1.40kg~1.70kg 범위로 하되, “갑”的 필요에 따라서는 출하 평균체중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될 시에는 “갑”的 판단하에 출하체중 범위에 관계없이 출하 할 수 있다.

③ “을”은 수시로 중량을 측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출하시 중량측정은 “을”的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출하 평균중량이 ±50g이상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출하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출하차량 회차시 “갑”은 “을”에게 회차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임의로 출하를 강행할 시에는 불임의 기준에 따른 사료요구율과 육성율에 대한 보상 및 생산지수 등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을”은 사료낭비를 막고, 도계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며, 도계 과정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하여 출하차량에 육계를 상차하기 시작할 시점 3시간 전에는 사료급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를 어김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은 “을”的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상차 및 운송) ① 육계 출하시 운송은 “갑”的 책임으로 하며, “을”은 사육농장까지 차량 진입에 장애가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로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을”的 부담으로 한다.

② 육계 상차는 “갑”的 책임으로 하고, 출하시 “을”은 농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상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을”的 사육불량으로 이상이 있는 계군을 출하시켰을 때 도계후 계육에 흥부 수종이 있거나 심한 도체 손상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발생된 수수에 출하시의 평균체중을 적용한 금액을 사육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출하중량 계근 및 출하수수) ① 출하시 계근은 “갑”的 계근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的 요구에 의하여 농장 인근에 있는 개인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계근 비용은 “을”的 부담한다.

② “을”的 요구에 의하여 개인계량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갑”的 계근시설에서도 중량을 측정하여 “갑”과 “을”이 측정한 중량의 평균치를 출하중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오차가 클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출하수수는 농장에서 상차시 확인된 수수로 한다.

제14조(기준 육성율) ① 육성율은 출하수수 ÷ 입추수수(넘 3%를 제외한 마리수) × 100으로 계산하며, 기준육성율은 ()%로 한다.

② 육성율이 ()% 이상일 경우 “갑”은 ‘을’에게 불임의 기준에 따라 육성율에 대한 성과급을 적용하여 사육비 지급시 정산한다.

③ 육성율이 ()% 미만일 경우 “갑”은 미달수수에 대하여 “갑”的 공급한 자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차감하고 사육비를 정산한다.

④ 육성율에 대한 성과급 계산시 병아리 수당 기준가

격은 붙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병아리 구매가격 변동시 “갑”은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반드시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기준 사료요구율) ① 사료요구율은 생체중 1kg 증체에 소요되는 사료섭취량 비율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기준 사료요구율의 산정과 사료요구율에 대한 성과급은 붙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사육비 지급시 정산한다.

③ 사료요구율에 대한 성과급 계산시 기준 사료가격은 붙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원료사료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갑”은 기준 사료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반드시 그 사유를 “을”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육비 지급) “갑”은 최종 출하일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사육비를 정산하여 “을”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육수수료의 10%를 추가지급해야 하며 이때, 어떤 경우라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별도로 제공하는 사양기록일지 등을 작성하여 출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양기록일지 작성 제출시까지 사육비 정산 및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7조4항의 피해로 인해 사계로 인정받은 계군에 대하여 “갑”은 “을”的 1년간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사육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7조(원자재의 임의 처분금지) ① “을”은 “갑”이 공급한 사료, 병아리 등 생산자재와 이를 사용하여 사육한 육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② “을”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갑”的 손실에 대하여 “을”은 사고발생 확인일 기준 육계가격(대한양계협회 발표자료 적용)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기한이익상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중이라도 “을”은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고 “갑”에 대한 채무잔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 “을”이 본계약서상의 각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압류, 가압류, 가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② 이 때 “갑”은 “을”的 동의 없이 “을”的 농장에 진입하여 계사시설물을 이용, 출하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를 가지며 “을”은 “갑”的 정당한 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을”이 “갑”과 사전 협의 없이 타 병아리를 임의로 입추하거나 “갑”的 병아리 입추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을”은 1회전 입추계약수수에 해당하는 병아리 대금의 1.5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병아리 가격은 붙임의 병아리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的 사정으로 제5조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1회전당 평균사육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담보) ① “갑”과 “을”은 계약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나 은행의 지급보증, 보증보험사의 보증,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신용보증사의 보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갑”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갑”이 부도 등의 이유로 사료공급 등이 중단되고, “을”이 사육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의 모든 규정에 불구하고 “을”은 사육중인 육계중 사육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육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③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을”은 “갑”的 청구에 의하여 즉시 “갑”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 또는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해당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을”과 “을”的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갑”的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행사 보전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담보권의 설정, 변경, 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4. 채무이행 자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최고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채무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을”的 사양관리 부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사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을”이 이 계약 이행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的 원인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계열농가로서 향후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 ③ “을”은 “갑”이 공급하는 병아리 및 사료의 불량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갑”에게 해약을 통보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관할법원은 “을”的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조문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나 문구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준한다.

제25조(닭고기등급제) 본 계약에 불구하고 닭고기
품질등급제가 시행되면 동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다.

제26조(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관련
공공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기타)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
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계열주체)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을”(계열농가)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아래 본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
에 의하여 “을”에게 공급된 “갑”的 재산을 “을”이 임의
로 처분하거나, 정산 미수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등에
따른 “갑”的 손해 발생액 전액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
여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연대보증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을” 및 연대보증인 자필확인자

직 책 :
성 명 :

(인)

사육수수료 정산기준

▲ 사육수수료에서 ()의 표시는 농가요청으로 출하
가 지연될 때 적용한다.

▲ 기준 사료요구율이란 출하일 포함 이전 1년간 출
하된 전체 농가의 성적중 육성을 90%이상으로서 사
료요구율 상위 20% 성적을 제외한 평균 사료요구율
을 말하며 입추일 기준 2~7월은 1.910, 8~1월은
1.890을 하한선으로 한다.

▲ 출하평균체중 1.70kg이상에 적용하는 사료요구
율 추가적용은 “갑”的 사정에 의해 생산된 경우에 한
하여 출하일별 분리적용하며, 출하중량 오차범위가
 $\pm 50g$ 을 초과할 경우 예상중량과 실제중량 중 가벼
운 중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육수수료 정산기준표

출하체중 평균(kg)	사육수수료 (원/kg)	약풀비 (원/수)	사료요구율 적용	깔짚비 (원/수)	상차비 (원/kg)	연료비 기준(1/수)
-0.95미만	130	35				
0.95이상~1.00	130	35				
1.00 ~ 1.10	130	35				
1.10 ~ 1.20	130	35				
1.20 ~ 1.30	135	45				
1.30 ~ 1.35	135	45				
1.35 ~ 1.40	140	45				
1.40 ~ 1.45	140	50				
1.45 ~ 1.50	140	50				
1.50 ~ 1.55	140	50				
1.55 ~ 1.60	135	50				
1.60 ~ 1.65	135	50				
1.65 ~ 1.70	135	50				
1.70 ~ 1.75	135(125)	50	기준+0.081			
1.75 ~ 1.80	130(120)	55				
1.80 ~ 1.90	130(120)	55	기준+0.115			
1.90 ~ 2.00	130(120)	55				
2.00 ~ 2.10	130(120)	55	기준+0.130			
2.10 ~ 2.20	130(120)	55				
2.20 이상	130(120)	55				

▲ 사육수수료는 (사)대한양계협회가 조사 발표한 육계가격을 기준으로 “갑”은 생체 kg당 1,400원까지는 기히 약정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되 1,400원부터 100원 인상 시마다 10원씩 “을”에게 추가 지급한다.

▲ 사료 및 병아리에 대한 정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95)%의 육성율을 기준으로 (95)%미만일 경우 “을”은 “갑”에게 변상하고, (95)% 이상일 경우 ‘갑’은 ‘을’에게 보상한다.

- 사료 : (적용사료요구율 - 실제사료요구율) × 사료단가(300원/kg) × 총 출하중량(kg)

- 병아리 : (실제육성율 - 기준육성율(95%)) ÷ 100 × 병아리단가(360원/수) × 입추수수

▲ 생산지수에 대한 성과급 기준금액은 생산지수 210이상일 경우 1점 초과당 0.5원/kg을 지급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 생산지수는 총 출하성적으로 산출한 값을 적용하며, 출하 일별 중량오차 범위가 ±50g을 초과하거나 등외품 발생율이 6%를 초과할 경우 당일 출하 분에 대한 지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생산지수 = [(출하 평균체중(kg) × 육성율(%)) ÷ (사료요구율 × 출하일령)] × 100
- 생산지수성과급 기준금액(원/kg) = (산출지수 - 210) × 0.5
- 생산지수성과급 = 기준금액 × (총 출하중량 - 제외중량)

▲ “갑”의 요구에 의하여 영계로 출하하였을 경우 출하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 출하평균중량 1.00~1.299 : 80원/수 × 상차마리수
- 출하평균중량 1.20~1.399 : 50원/수 × 상차마리수
- 출하평균중량 1.30~1.499 : 20원/수 × 상차마리수

▲ 영계출하 장려금은 출하 차량 단위로 계산하여 최종 정산시 추가 지급한다.

▲ 항목별 계산방법

평균체중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4째 자리에서 반올림)

사료요구율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4째 자리에서 반올림)

육성율 :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계산(2째 자리에서 반올림)

생산지수 : 정수(소수점 이하 1째 자리에서 반올림)

사육기간 : 정수(소수점 이하 1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사육기간 계산방법

입축일은 사육기간에 포함하고 출하일은 사육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2회 이상 출하시 출하일별 출하중량~사육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출하중량으로 나누어 평균 사육기간을 구함

- 평균사육기간 = $\Sigma(\text{출하일별 출하중량} \sim \text{출하일별 사육기간}) / \text{총 출하중량}$ 양계